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결산승인 등을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6월·7월에서 5월·6월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16.1.12.)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안 제4조)

- 당초: 7월 7일 ⇒ 변경: 6월 7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조례안예고 : 의견없음[2016. 4. 7~ 4. 12(6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서 세입·세출 출납폐쇄기한이 당초 익년도 2월말까지에서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 승인 등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가 당초 “6월·7월”에서 “5월·6월” 중으로 개정(2016.1.12.)됨으로써, 이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자를 당초 “7월 7일”에서 ”6월 7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 및 재정분석, 각종 통계작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의회 회기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